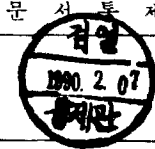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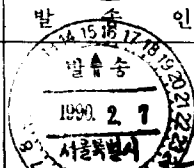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민 01237-62	(전화: 731-6231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5년			
시행일자	'90.2.	<i>김충민</i>		
보조 기간 관	시민과장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문서통제
	문서관리계장			
기안책임자	김충민			발송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제목	관인 재교부 승인			
제 1안 내부결재				
1. 탄관 01237-128(90.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조례 제 2537호(89.12.27)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조례				
제 2540호(89.12.27)에 의거 "탄천하수처리장장" 으로부터 관인 재교부 승인 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바,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 와 서울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관인 재교부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승인 사항				
관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사용개시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장인	한글전서체 (2.1cmx2.1cm)	따로붙임	90.2.10	당초승인 87.7.15.

1505-25(2-1) 일(1)갑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87. 4. 17.

<p>따로붙임 : 1. 승인인영 1부.</p>
<p>2. 공고(안) 1부. 끝.</p>
<p>제 2안</p>
<p>수신 : 탄천하수처리장장</p>
<p>제목 : 같은건</p>
<p>1. 탄관 01237-128(90.2.2.)호와 관련임.</p>
<p>2. 귀 하수처리장의 관인 재교부 승인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p>
<p>관계법규에 의거 관인의 관리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6조에 의거</p>
<p>구관인을 한강공원 관리사업소에 폐기조치 할것.</p>
<p>가. 승인사항 : 제 1안 제 2호 가항 이기시행</p>
<p>따로붙임 : 승인 인영 1부. 끝.</p>
<p>제 3안</p>
<p>수신 : 총무처 장관</p>
<p>참조 : 법무 담당관</p>
<p>제목 : 관보개제 의뢰</p>
<p>1. 우리시 산하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장"의 관인 재교부 사항을 관인</p>

<p>규정 제9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따로붙임 : 1. 공고(안) 2부</p>
<p>2. 인영부 2부. 끝.</p>
<p>제 4안</p>
<p>수신 : 공보관 (홍보계획 담당관)</p>
<p>제목 : 시보 게재의뢰</p>
<p>1. 우리시 산하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장"의 관인 재교부 사항을 서울</p>
<p>특별시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게재를 의뢰하니 게재에 철저히</p>
<p>기하기 바람.</p>
<p>따로붙임 : 1. 공고(안) 2부.</p>
<p>2. 인영부 2부. 끝.</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78</p>

서울특별시    공고    제 73 호

공고 일 일	일 일	1990.2.7	제 34 호
	발 부 발 부 발 부	발 부 발 부 발 부	발 부 발 부 발 부



공                    고        (안)  
  
관 인 재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89.12.27. 서울특별시 조례 제2537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설치조례 (89.12.27. 서울특별시 조례 제 254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 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1990. 2. 7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90년 2월 10일
2.    관인재교부 내역        :    따로붙임.

# 승 인 인 영

구 분	승 인 내 역
<p>구 인 영 ( 폐기인영 )</p>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탄천하수처리 장장인)
<p>신 인 영 ( 재교부인영 )</p>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 장장인)

제 1463 그 1 호  
1989. 12. 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수  
 편집인 : 공 보 관 유 천 수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536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개정조례 ..... 3

제2537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 3

제2538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 ..... 5

제2539호 서울특별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 5

제2540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 5

제2541호 서울특별시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증개정조례 ..... 8

제2542호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 ..... 9

(이면계속)

판	선	결	수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36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일반회계중 기능직정원 "419"를 "444"로하고 정원내용증, 10등급 건축원"3"을 "4"로, 교환원"3"을 "6"으로, 전기원20을 "22"로, 기계원 "24"를 "23"으로(영사"6"을 "5"로), 통신원"3"을 "4"로, 사무보조원"197"을 "210"으로(조무 "113"을 "126"으로), 방호원 "40"을 "46"으로하고, 합계정원 "1,763"을 "1,788"로 한다.

(별표 1-2)

경찰국지방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정원 "555"를 "561"로하고 정원내용증 10등급전기원 "15"를 "16"으로, 기계원 "35"을 "37"로하며, 사무보조원 "410"을 "416"으로(조무"342"를 "348"으로)한다. 합계정원 "612"를 "621"로 한다.

(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회계중 7급정원 "1,881"을 "1,893"으로하고 정원내용증 환경직 "26"을 "38"로하고, 8급정원 "2,784"를 "2,804"로하고 정원내용증 "기계도

는 화공직 20"을 신설한다. 별정직정원 "220"을 "232"로하고 정원내용증 7급상당 "141"을 "153"으로(사회복지전문요원 "35"를 "47")로 한다. 기능직정원 "3,398"을 "3,480"으로하고 정원내용증 7등급 전기장 "92"를 "97"로 하고 8등급전기원 "39"를 "40"으로하고, "기계원 1"을 신설하며 '9등급 전기원"1"을 "3"으로하고 "기계원4"를 신설한다. 10등급 운전원 "1,067"을 "1,073"으로, 건축원 "5"를 "27"로, 전기원 "341"을 "354"로 기계원 "187"을 "211"로(기계"158"을 "182"로), 사무보조원 "994"를 "998"로(조무"529"를 "533"으로), 합계정원 "16,864"를 "16,990"으로 한다.

(별표1)

농촌지도소지방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정원 "19"를 "20"으로하고 정원내용증 10등급 운전원 "3"을 "4"로하고 합계정원 "20"을 "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37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강장비와 향구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기위하여"

를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관리과, 방재과 및 시설과, (중략)하수처리장, 합천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리장 및 난지하수처리장을 본다"를 "사무과, 관리과, 방재과 및 시설과를 본다"로 하고**  
 동조 제2항내지 제6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②사무과장 및 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방재과장은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기정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사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관인, 보안 및 인사  
 2. 기각, 행사, 홍보  
 3. 예산, 회계 및 관공관리  
 4. 유선, 도선, 선박에 관한 인·허가 및 운영지도 감독  
 5. 수상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 기타 소내다른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이용 종합계획 수립

2. 하천법상 인·허가 업무
3. 수영장 운영
4. 지구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5. 한강내 고수부지 및 수상침소
- ⑤방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예방 및 대책
  2. 저수조정비 및 수자원 공급
  3. 수질보존 및 한강 생태계에 관한 보호 연구
  4. 수상안전지도 및 긴급구조
  5. 긴급도강 시설의 운영관리 및 훈련
- ⑥시설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이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2. 하천시설물의 설치 공사
  3. 고수부지내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별 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는 별첨과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정 원	장 원 내 용
2, 3급	1	행정직 1
4 급	4	행정직2, 행정 또는 시설직1, 임업또는 시설직1
5 급	15	행정직6, 행정 또는 화공직1, 행정 또는 별정직1, 행정 또는 선박직1, 선박직1, 토목직3, 임업직2
6 급	19	행정직8, 행정 또는 별정직3, 선박직1, 토목직3, 임업직2, 화공직1, 수산직1
7 급	36	행정직12, 행정 또는 별정직3, 행정 또는 임업9, 선박직2, 토목직3, 임업직2, 전기직1, 기계직1, 수산직1, 환경직2
8 급	31	행정직11, 행정 또는 임업직9, 토목직3, 임업직4, 화공직2, 선박직2
9 급	18	행정직3, 행정 또는 별정직10, 토목직1, 선박직1, 임업직2, 화공직1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별정직	1	7급상당 (기상요원)
기능직	95	7등급 : 선장6, 통신장2, 기관장4 8등급 : 선원3 10등급 : 운전원19, 기계원5, 전기원8, 농림원7, 사무보조원16 (타자4, 집배1, 조무11), 방호원25
계	220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2538호</p> <p>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p> <p>서울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기능직 정원 "57"을 "6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사무보조원 "30(타자5, 조무22, 집배1, 정산2)"를 "36(타자6, 조무27, 집배1, 정산2)"로하며, 합계정원 "131"을 "13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2539호</p> <p>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p> <p>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기능직 정원내용에 "8등급 : 사무보조원3(조무3) 및 9등급 : 사무보조원10(조무10)"을 신설하고 10등급 사무보조원 "137"을 "124"로(조무 "134"를 "121"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540호</p> <p><u>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u></p> <p>제1조(설치)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u>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중랑, 탄천, 안양 및 난지하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한다)을 둔다.</u></p> <p>제2조(위치) 처리장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p> <p>제3조(장장) ①처리장에 장장 1인을 두고 중랑 및 탄천하수처리장장은 지방시설기계 또는 지방공업기점으로 안양 및 난지</p>		

판 권 하 수 처 비 장

만관 01237-138 576-5847

1990. 2. 2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시민과장

제목 관인 개각 신청

1. 서울특별시 조례 제2540호에 의하여 1989.12.27일부로 서울특별시 직속 판권하수처리장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규칙 제5조 예의거 관인의 고부를 신청코자 합니다.

- 첨부 가. 관인신조(개각) 신청서 3부.
- 나. 관인 대장 3부.
- 다. 인영부 3부. 등.

사 건	신청장	부	결 지	신청장
연월일	1990. 2. 8	번호	190	
내 역	시 분		(공란)	
기 타	신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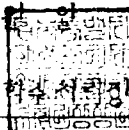
판 권 하 수 처 비 장



관인신조 ( 각과 ) 신청서

수신 : 서울특별시 네무국 시민과


1990년 2월 일



신청기관명: 탄천하수처리장



이 유	기관명칭 변경			
서체, 규격	직인 2.1센티 x 2.1센티			
관인명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장인			
세긴 날	1990. 2.			
세긴 사람	주소	종로구 창성동 524-2	성명	조 태 인
제 료	수 무 각			
사용 기시	1990년 2 월 일			
비치처및관수자	장장 황 정 윤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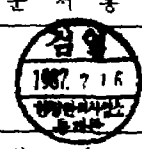
관 인 대 장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단천하수처리장
용 도	문서사무 전용
고 부 일자	1990. 2. 1990 2. 07
사용 개시일자	1990. 2. 1990. 2. 10
사용 개시단시인영	
폐인 일자	
폐인 사유	
폐인 단시인영	
비 고	

1. 재고부시

인 영 부

관 인 명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직인
구 인 명	
신 인 명	

분류기호 문서번호		관리 01237-1811 (전화: 796-2235)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7. 7. 18			
보조 기 관	관리과장	협조 기관 심사필 No(3)		문서통제	
	서무계장				
기안책임자		이 춘 기		발 송 인	
경 유 수 신 참 조	제1안 내부결재		발 신 경 의	소 장	
제 목		관인신조			
1. 탄천 01237-5(87.7.3)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설치조례(조례제2093호 (86.8.16) )에 의하여 설치된 탄천하수처리장의 직인을 신조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6조에 의하여 시보에 게재 의뢰하고자 합니다.					
첨 부 : 1. 관인신조 신청서 1부.					
2. 관인사용공고문 1부. 끝.					
제 2 안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공 보 관					

1505-25(2-1)일(1)갑  
85. 9. 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86. 4. 8.

제 목 : 시보게재의뢰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소속 기관으로 탄천하수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한 관인의 사용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 부 1. 관인사용공고문 1부.			
2. 신조관인 및 계인란영 1부. 끝.			
계 3 안			
수 신 : 탄천하수처리장장			
제 목 : 관인교부 승인			
1. 탄천 01237-5(87.7.3)호로 요청한 관인교부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승인하니 관인의 사용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할것.			
가. 승 인 사 항			
구 분	관 인 명	서체 및 규격	사용개시일자
교부승인	서울특별시한강관리 사업소탄천하수처리장장인	한글전서체 2.1cmx2.1cm정사각형	87.7.15
"	서울특별시한강관리 사업소탄천하수처리장계인	한글전서체 1.5cmx3.6cm타원형	
90			